

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6(임원의 선임등)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는 조합원외의 자중에서 이사회에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는 제청을 위한 이사회에 의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, 당해 부이사장 및 상근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재적이사로 본다.

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하되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1. 조합원
 2.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
 3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
 4. 전기공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임원
-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,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으로 한다.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상근으로 하고, 조합원인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의6(임원의 선임등)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는 (이하 생략)	제10조의6(임원의 선임등)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는 (이하 생략)
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	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하되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1. 조합원 12명	1. 조합원
2.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	2.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
3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	3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
4. 전기공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임원중 1인	4. 전기공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임원
③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,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으로 한다.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상근으로 하고, 조합원인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	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,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으로 한다.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상근으로 하고, 조합원인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	< 부 칙 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896